
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한다)을 설치·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.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.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.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. 전국체육대회·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.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<p>제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<p>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체육진흥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.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. 학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.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<p>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.</p> <p>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5조(수당 등)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</p>	<p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·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안정성·수익성·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</p> <p>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. 다만,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.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 3.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<p>제8조(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)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를 준용하며,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2001. 1. 1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안경위
---	--

20 (第123回-文化教育第2次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안은 2000. 10. 20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00. 10. 24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 <p>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</p> <p>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,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.</p> <p>※ 현재는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.</p> <p>3. 검토의견</p> <p>□ 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안은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, 구입공고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됨. ○ 현재 유물 구입은, 유물구입공고→유물수집실무위원회 평가(1차)→유물평가위원회 평가(2차)→개관준비위원회 기획·유물분과회의 평가(3차)→유물구입계약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. ○ 그러나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긴급성을 고려하여 3단계 과정 중 중간단계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·평가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, 이번에 개정 요구한 부분도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. <p>국가 및 시·도 지정문화재는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수집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유물로서의 가치가 기왕에 검증된 것인 만큼 신속한 수집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</p>	<p>필요할 것으로 보여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.</p> <p>○ 이번에 개정 요구된 부분 외에 동 조례 제5조(유물기증)제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홍법의 인용조문 중 “제25조”는 ‘99년도 12월 동법 개정시 내용 변경 없이 “제8조”로 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5조 역시 개정되어야 함.</p> <p>※ 제5조(유물기증) ①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제5조제1항 중 “제25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시립박물관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2항 중 “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”를 “시장이 경매유물, 국가 또는 시·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”로 한다.</p> <p>제5조제1항 중 “제25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</p> <p>제8조제3항 중 “유물과장”을 “유물보존과장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--	--